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94
----------	-----

제출연월일 : 2008. 1. 11.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로수 관리청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가로수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 위치, 심는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병충해 방제, 가로수의 외과수술 및 점검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라.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2007. 10. 18. 규제개혁위원회 원안의결 / 규제 1건

(2) 입법예고 : 2007. 9. 21. ~ 10. 10.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성협의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할 경우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조례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가로수의 수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조성·관리 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대전광역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심는다.

1.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가로수의 심는 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1. 교목(키큰나무)

- 가. 심는 거리는 6m~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성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심는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 나. 심는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키작은나무)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의 균식으로 하고, 동일 식재군에는 동일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라.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도로표지판 등이 서로 겹쳐질 경우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심어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9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8.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뀌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가지치기) ①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뀌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지형과 토양보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다.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라.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 cm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나 도로변에 집적된 토사

등을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②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시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15조(점검) ①관리청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대상은 바뀌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신규식재·바꾸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주민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시행)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또는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에게 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원인자부담금)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회복 요구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리청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 14일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사전 협의)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청 또는 사업주체는 시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1. 도로 신설계획 수립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를 제거, 이식 및 수형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를 할 경우
2. 시비보조 사업으로 조성·관리중인 가로수를 다른 목적으로 이식, 바뀌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제21조(가로수관리대장)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가로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리청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2조(보고) ①관리청은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실적을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전광역시 조경시설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제4조제2항 관련)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별표 2]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제18조제5항 관련)

1. 피해발생의 경우

가.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나.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다.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라. 원인자가 원상복구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담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복구확인서에 의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마.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 부담금 세외수입 조치

바. 관리청에서 원상복구할 경우 : 도급공사설계비 세외수입 조치

2. 피해이외의 원인발생의 이유

가. 이식하는 경우

(1)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원인자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2) 관리청에서 이식하였을 경우 : 이식비 세외수입 조치

나. 제거하는 경우

(1)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승인 후 시행하되, 원인자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2)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세외수입 조치

3. 기타 사항

- 가.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를 적용하고 이에도 없을 경우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시행자의 견적가격 적용
- 나. 예치금 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 200만원 이상 하자책임담보기간동안 예치
- 다. 예치금 예치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 라. 원인자의 원상복구는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시행자에 의한 식재 및 관리에 따른 원상복구를 말함.
 - ※ 원상복구를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시행자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복구확인서 및 하자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담금 납입은 생략할 수 있음.

관 련 법 규 발 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의 도로 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이하 "가로수"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가로수조성·관리계획)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제19조에 따른 도시림조성·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조성·관리사업계획
7.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가로수 조성·관리)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업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③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가로수조성·관리 조례표준 / 산림청

제11조 (비용부담) ①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그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12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관리청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9]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1조 제4항 및 제7항 관련)

<p>피해발생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p>피해이외의 원인발생의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